

세관의 검증지원으로 미국세관 배제결정도 '충족'으로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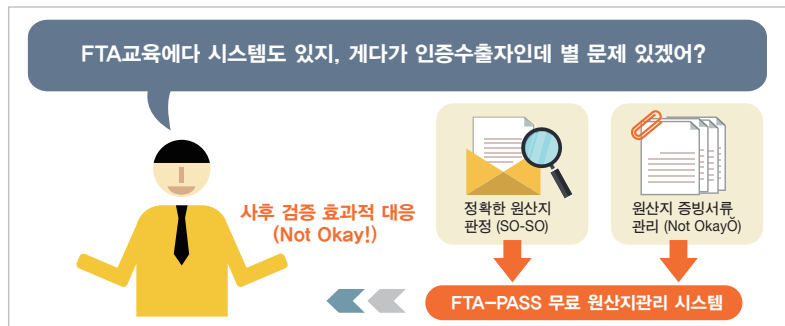
- B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양말·내의편조 등 편직 제조 회사로 2013년 기준 수출금액 7,706천불에 달함
- 제품소개

주요생산품목	양말(연간 생산량 : 720만 DOZ)
생산방법 (KNITTING)	75% 자체 생산, 25% 외주 생산
생산설비	편직기 67대
수출비중 (미국수출비중)	90%(미국 수출비중 90% 해당)



2. 모델활용 전

1. 업체 FTA 활용 문제점 및 미국세관 검증 결정



-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FTA 활용을 위한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지원 받았지만, 업체 스스로 준비·대응해야 하는 '대장관리 및 서류보관'에 미숙

- 서투른 원산지관리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언제나 '원산지 No Problem' 일관
- ▶ 그러나, 상대국 검증이 있을 때마다 **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** 원산지 신뢰 불씨 제공, '12년 후반부터 對미 수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



- 자료 제공에 장시간(4시간)이 소요되었음에도 생산기록 입증자료 제출 불가로 CBP의 “제3국산 원사 반입, 제3국산 우회수출” 의심을 키움
 - 결국, 미국 CBP는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고 기타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정적 결정을 전달

3. 극복 방안

1. 특혜관세 배제결정 해결 과정

- <1단계> △△세관 수출 · 생산업체 진술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재검증 실시
- <2단계> △△세관에서 검증완료한 상기 결과와 함께 CBP가 요청한 생산일지(production records) 및 원산지확인서 등 생산자료를 미국 CBP에 이메일로 제출
- 미국 CBP, △△세관 원산지검증 결과에 동의, 이견 없음을 통보!
 - 미국 CBP, 현지검증 당일의 특혜관세 배제 결정을 ‘반복’하고, ‘충족*’ 재결정

*서울세관의 검증 결과인 업체의 '①원산지 규정 위반사항 없음, ②제외 대상 세번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로부터 원사 사용, ③생산기록 일치, ④원산지 충족, ⑤기록관리 적정 판정에 모두 동의

4. 활용 효과

- 당해 검증 건 뿐만이 아닌, 한-미 FTA 발효 이후 업체가 원산지 증명서(C/O)를 발행한 165억원 상당의 수출물품에 대해 추가 검증없이 26억 상당의 특혜관세 유지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
- 다소 늦었지만 미국 CBP 원산지 검증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국 내 '원산지관리 부실' 수출기업에서의 이미지 쇄신
 - ▶ 향후 수입자를 포함한 對미 양말수출 거래 유지
- 직접 원산지검증에 대응함으로써 '기업 스스로의' 중요성을 절감하고 향후 원산지 재검증에 대한 부담 완화로 FTA활용 재도약

5. 시사점

1.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확인

- 업체는 세관의 YES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받고 있었으나, 정작 업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미흡하였음을 깊이 반성
 - ▶ 철저한 원산지 관리* 능력이 FTA활용과 연결됨을 인식하여 본격적인 원산지관리 전산 정비에 돌입

* 미국 섬유검증은 특정 생산과정만 검증하는 것이 아닌, 제출된 원산지 증빙 자료의 전체적인 상호 연계 및 기록·관리의 일관성 중시

2. 민·관협력 적극적인 검증 대응

- 직접검증 당일 미국세관의 '원산지 불충족' 예비판정이 결정된 후 수출자·생산자와 세관이 함께 협력하여 '충족'으로 검증결과 반복
- 포기하지 않고 서울세관에 자문을 요청하고, 적절하게 대응방법을 지원 받음으로써 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방지한 모델